

# 심사보고서

의안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의안번호	제437호
심사일자	2026. 6. 16.



위원장 신영재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437
------	-----

2026년 6월 16일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5. 28. 송파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6. 6. 1.
- 다. 상정일자: 2026. 6. 16.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(돌발행동)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(안 제1조~제2조)

-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보험의 보장내용 및 청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(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  - (2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예산조치: 별도 예산 편성 필요 (보험료 지원 예산)
- 관련부서 사전협의
  - (1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
  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보육과)
  - (3)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
- 기 타
  - (1) 제정문안, 관계법규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첨
  - (2) 입법예고: 2026. 4. 23.~ 5. 13.
    - ※ 근거: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 - (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진미숙)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 
-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

의안번호 제43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·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- ▶ **안 제1조(목적)**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,
- ▶ **안 제2조(정의)**에서 ‘발달장애인’과 ‘보호자’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, ‘보험’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고,
- ▶ **안 제3조(보험 가입)**에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
- ▶ **안 제4조(보험회사 선정)부터 제6조(보험의 보장내용 등)**에서는 보험회사 선정,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보험의 보장내용 등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▶ **안 제7조(보험금 청구)**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청구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고,
- ▶ **안 제8조(보험금 지원 제외)**에서는 피보험자가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등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

투명성을 확보하였음.

○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

-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·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.

#### 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**【질의】** 전정 위원

- 보험 대상자의 발굴 및 홍보방안은?

**【답변】**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

- 일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도 발굴은 필요하지 않으며, 정책에 대한 홍보는 동주민센터나 소식지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.

**【질의】** 최옥주 위원

- 안 제7조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 절차 안내 방안은?

**【답변】**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

- 보험사와 계약하여 가입하게 되면, 구청에서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추진하고,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를 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음.

**【질의】 최옥주 위원**

- 안 제6조제2항의 보험료, 보장금액, 자기부담금 등에 관하여 현재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?

**【답변】 최현정 주민복지국장**

- 송파구청에서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얼마를 부담하느냐에 따라 보장 내역 등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.

**5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